

□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

-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지방대학 졸업자(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- 2개 이상의 대학 졸업의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판단

□ 비수도권 지방학교 인정기준

-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‘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’

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‘분교’ 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
\* (예시) 연세대 원주캠퍼스, 고려대 세종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

다.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
라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-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
가.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
나.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
다.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
라.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□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□ 지방대학 졸업여부 검증

- 졸업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지방대학교 졸업자임을 검증하되, 분교인 경우 졸업증명서에 본교와 분교의 구분이 없는 관계로 분교 졸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 학교장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검증